

노동통계연구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박진희*

I. 서론

- 임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직접비용 이외에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총지출액을 포괄하는 기업의 노동비용은 근로자의 임금 및 후생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 기업의 노동비용은 산출액 또는 매출액 등과 함께 가공¹⁾되어 비용측면에서의 경쟁력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이용되기도 하는 등 상당히 중요
 - 노동비용은 ILO 노동협약 중 노동통계분야의 작성의무 통계이기도 함.
 -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연 1회 조사·발표하고 있음.
- 노동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기업체노동비용조사』는 근로자의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조사·파악하기 위해 기업체 단위로 조사되며 근로자 복리후생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음.
- 그러나 『기업체노동비용조사』는 ILO 권고의 최하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이며, 정부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한다는 목표에 다소 미진한 것으로 판단됨.
 - ILO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 중 노동비용을 보면, “노동비용에 관한 통계는 경제활동부문별로 조사가능해야 하며, 가능한 고용 및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와 일치해야한다”고 명기
 - 현재 우리는 노동비용과 고용 및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는 일치하지 않고, 단지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parkjh@kli.re.kr).

1) 단위노동비용=노동비용/생산성.

노동비용의 수준만을 파악할 수 있음.

- 따라서 본고는 『기업체노동비용조사』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 본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
 - 제Ⅱ장에서는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봄. 구체적으로 『기업체노동비용조사』의 목적, 조사대상 사업체의 선정방법 및 조사방법, 조사내용, 그리고 조사연혁 등을 간략히 살펴봄.
 - 제Ⅲ장에서는 『기업체노동비용조사』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본고를 맺음.

Ⅱ. 『기업체노동비용조사』의 주요 내용

1. 조사개요

- 『기업체노동비용조사』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때 발생하는 제비용의 종류 및 금액 등을 조사·파악함으로써 노동정책의 기초자료뿐 아니라 근로자 복리후생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일반통계로 승인되어 작성
- 조사기준기간은 당해년 회계연도 1년이며, 조사는 3월 말 이전 결산법인의 경우 5월 1일~10일, 4~6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7월 3일~5일까지 실시
 - 조사주기는 연간단위로 진행
 - 조사방법은 해당사업체가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자계식 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지만 조사표 기재상 중대한 착오, 누락이 있어 간접적인 지도로 정정할 수 없거나 조사표 제출이 과도하게 지연된 경우 타계식 조사방법을 병행
- 조사대상 기업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 통계적 방법에 의해 추출된 비농전산업의 2,300개(1999년 회계년도 조사기준) 표본기업
 - 기업체의 조사범위는 전국의 농림어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부문을 제외한 전산업
- 조사는 기업체 속성에 관한 사항과 노동비용에 관한 항목으로 구분(표 1 참조)
 - 기업체 조사항목은 사업체명과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요 생산품명, 노동조합 조직현황 등을 질문
 - 노동비용에 관한 사항으로는 월 지급인원, 현금급여, 퇴직금, 법정복리비 및 법정

외복리비, 현물지급비용, 모집비, 훈련비 등을 질문

- 현금급여는 정액급여(기본급, 제수당 등), 초과급여, 상여 및 기말수당 등의 합계액
- 퇴직금의 비용은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등을 포함한 퇴직일시금 지급총액을 말함.
- 법정복리비는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중 사업주 부담분과 장애인고용 촉진기금 부담금 및 기타 법정복리비를 말함.
- 법정외복리비는 사업주 단독의 시책에 따른 부담분으로 주거, 식사, 의료, 보건, 문화, 체육, 오락, 경조 등의 비용, 구판장 등에 관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물적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인건비(시설에 종사하는 자의 임금, 수당 등) 등을 포함.
- 교육훈련비는 일반적으로 교양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근로자의 교육 훈련 시설에 관한 비용(단, 학교는 포함되지 않음), 지도원에 대한 수당, 사례, 위탁훈련에 소요된 비용 등의 합계액
- 현물지급의 비용은 통근, 정기승차권, 회수권 및 자사 제품 등을 지급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함.
- 모집비는 기업이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행한 모집관리비, 채용시험에 소요된 비용, 채용자 부임수당, 모집관계 업무수당에 전담적으로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등의 합계를 말함.
- 기타 노동비용으로 작업복의 비용, 전근비용, 사보에 관한 비용, 표창 등 상기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비용의 합계액이 있음.

<표 1> 조사항목

	항목수	내 용
기업체에 관한 사항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요 생산품명 • 노동조합조직에 관한 사항 • 상용근로자수
노동비용에 관한 사항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급지급인원(12개월 합계) • 현금급여(정액 및 초과급여, 상여금 등 특별급여) • 현물지급의 비용 • 퇴직금 등의 비용 • 모집비 • 교육훈련비 • 법정복리비 • 법정외복리비 • 기타 노동비용

자료 :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2000.

2. 조사연혁

- 『기업체노동비용조사』는 1982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하여 임금 이외의 노동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표 2 참조).
 - 30인 이상 기업체의 비농 전산업을 조사대상으로 노동비용을 조사하기 시작하여 1998년부터 10인 이상의 기업체로 확대 조사
 - 내용상의 변화를 보면, 1984년까지는 ‘퇴직금의 비용’ 중 사외적립금을 포함시켜 조사하였으나 1985년부터는 실제로 발생한 퇴직금(중간정산금을 포함)을 기준으로 조사
 - 법정외복리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보육비 지원금’, ‘근로자 휴양에 관한 비용’, ‘종업원지주제도 지원금’ 등은 1991년 이후 추가로 조사되고 있음.

<표 2> 조사대상 및 방법 개요

	표 본 수	조사대상	조사방법
1982	1,721개 사업체	30인 이상 비농 전산업	자계식(타계식 병행)
1983	1,649개 사업체	30인 이상 비농 전산업	자계식(타계식 병행)
1985	1,645개 사업체	30인 이상 비농 전산업	자계식(타계식 병행)
1990	1,637개 사업체	30인 이상 비농 전산업	자계식(타계식 병행)
1995	1,615개 사업체	30인 이상 비농 전산업	자계식(타계식 병행)
1996	1,615개 사업체	30인 이상 비농 전산업	자계식(타계식 병행)
1997	1,786개 사업체	30인 이상 비농 전산업	자계식(타계식 병행)
1998	2,500개 사업체	10인 이상 비농 전산업	자계식(타계식 병행)
1999	2,307개 사업체	10인 이상 비농 전산업	자계식(타계식 병행)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각년도.

3. 표본설계

- 1997년 노동부에서 조사한 사업체노동실태조사 결과(2000년 현재)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중 분사 및 단독사업체의 경우만 추출한 후 사업체규모별, 산업중분류별로 층화하여 기업체 명단을 작성하여 표본 구성
 - 1982~89년까지는 1982년도 법인세 신고업체 중 매출액 2억 미만을 제외한 11,466기업체가 모집단

- 모집단을 매출액 2~10억원 미만, 10~20억원 미만, 20~50억원 미만, 50~100억원 미만, 100~150억원 미만, 150억원 이상 등 6개 층으로 나누어 층화하고 각 층별로 10%, 20%, 30%, 50%, 80%, 100%의 추출률을 적용하여 표본기업체 명단을 작성. 이러한 방법은 매출액 수준이 높은 우량기업만이 표본에 속하게 되다는 문제 발생
- 이러한 표본 편의를 보완하기 위해 1990년부터는 현재의 방법인 사업체노동실태조사(노동부)를 이용한 표본기업체 선정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표 3> 조사대상 표본기업수

(단위: 개)

	1규모 (10~29인)	2규모 (30~99인)	3규모 (100~299인)	4규모 (300~499인)	5규모 (500~999인)	6규모 (1,000인 이상)
전 체	550	540	533	247	207	230
광업	5	18	8	1	2	3
제조업	204	265	238	114	98	111
전기가스업	3	6	5	2	4	3
건설업	72	32	23	11	12	8
도소매업	81	35	29	19	6	10
음식숙박업	7	4	8	4	6	7
운수창고통신업	22	36	69	15	21	18
금융 및 보험업	24	27	38	14	9	24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83	67	62	44	20	27
교육서비스업	10	22	18	4	8	4
보건서비스업	20	9	14	12	9	6
기타서비스	19	19	21	7	12	9

자료 :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2000.

Ⅲ. 『기업체노동비용조사』의 개선방안

- ILO 노동협약 비준국으로서 가능하면 ILO에서 요구하는 노동비용과 고용 및 근로시간 자료와의 일치 필요
 - 노동비용 자료는 기업체 조사인데 비해 임금 및 근로시간 자료는 『매월노동통계조사』로 사업체 조사이며, 두 조사간 조사대상의 차이가 있음.

- 기업체 조사로서 고용자료는 없으며, 사업체 자료인 통계청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있으나 본사인지 단독사업체인지, 계열 공장인지에 관한 기업체 정보를 알 수 없어 고용과 노동비용의 관계를 분석할 수 없음.
 -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은 상용근로자에 한하고 있으나 모집단을 통계청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로 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²⁾ 고용형태별로 노동비용의 수준을 조사³⁾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기업 내에 비정규 근로자의 비중도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이들의 노동비용 구조를 파악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근로자의 복지, 후생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년 1회 기업제무제표가 발표되는 시기에 맞추어 『기업체노동비용조사』를 『매월노동통계조사』의 특별조사형식으로 조사할 것을 제안
- 그러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매월노동통계조사』의 조사 사업체를 본사 및 단독사업체 등 기업체로 구분할 수 있는 변수가 추가적으로 조사되어야 함.
 - 이렇게 된다면 ILO통계협약의 권고를 반영할 수 있으며, 『기업체노동비용조사』의 현금급여를 『매월노동통계조사』의 임금수준으로 보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음.
- 『기업체노동비용조사』의 조사내용에 기업경영지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조사하는 등 조사내용을 다소 보강할 필요가 있음.
- 매출액, 유형자산, 경상이익 등 기업경영지표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판단근거로 작용할 수 있어 임금정책의 방향제시 등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기업내 노동비용의 구조와 기업의 성과와 관련된 분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동수요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 고용 및 임금정책의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 노동부 조사인 사업체 노동실태조사가 폐지됨에 따라 2001년 회계년도 기준 통계부터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모집단으로 함.

3) 미국의 경우 근로자보수비용(Employer costs for Employee Compensation) 조사는 연 1회, 주요 직업별, 산업별, 지역별, 노조조직유무별, 규모별, 고용형태별로 이루어지고 있음.